

광주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나53708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이민아

피고, 피항소인 A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송민중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2. 12. 9.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가단54588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5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505,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고,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1) 제1심이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채권과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계될 수 없음에도 제1심이 상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계약보증금 감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일부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2022. 6. 14.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신설 취지 등을 참작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을 전체 계약보증금의 20%에 상당한 18,501,000원(= 전체 계약보증금 92,505,891원 × 20%, 천원 미만 버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다. 상계금지특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3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사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9호에서는 위 일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등에 정한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2조 제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51조 제4항 본문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이유 없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는 법 및 시행령 상의 규정을 그대로 계약내용에 편입시킴으로써 원칙적으로 원고와 참가인 모두를 기속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 시행령 제51조 제4항 단서,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3항 단서에서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기성공사대금채권)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도 같은 항 제3, 4, 5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다.

○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한다. 시행령 제51조 제4항은 본문에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기성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기성공사대금이 계약보증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제3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담보적 기능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계약상대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들이 50% 이상 출연, 출자한 법인, 공공기관 등 그 자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51조 제4항 본문에서 기성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를 금지한 데에는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항 본문은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과 마찬가지로 제1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 계약보증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정산의 문제만 남을 뿐 상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계약보증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 위와 같이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관한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51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의 “중공기한까지 37의 공사를 하고”를 “준공기한까지 37호의 공사를 하고”로 고쳐 쓴다.

나. 위 2.의 나.항의 판단에 따라 제1심판결문 제9면 제9행 내지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 공사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참가인이 77호 중 59호(76.6%)의 공사를 완료한 점, 4,412,000원의 지체상금을 부담한 점,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일부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2022. 6. 14.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신설 취지 등을 참작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을 18,501,000원(= 전체 계약보증금 92,505,891원 × 20%, 천원 미만 버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다. 위 2.의 다.항의 판단에 따라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5행 이하를 위 2.의 다.항 본문 기재와 같이 고쳐 쓰며, 그 마지막 부분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보증금 18,5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2019. 11. 27.부터 보증금 지급기간인 5일(계약보증약관 제6조 제1항, 갑제3호증의 2)이 경과한 2019. 12.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효진, 판사 김영아, 판사 김성흠